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64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2025. 7. 9.

다. 회 부 일: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u>국가관광전략회의</u> 를 둔다. <u><신설></u> <u><신설></u>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 ----- ----- ----- ----- <u>대통령</u> ----- ----- <u>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u> -----. ② <u>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u> ③ <u>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u> ④ <u>그 밖에 전략회의의</u> -----
② <u>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u>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다. 검토사항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 수립 관련 부처 간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지난 201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여행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규정하여 회의 안건 선정, 회의 소집 및 주재를 대통령이 수행하도록 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관광업계 등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관광 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전략산업인만큼, 대통령 주재 회의로의 격상을 통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유사 입법례 >

법률명	내 용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5.1.21. 제정 2026.1.22. 시행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2025.1.21. 제정)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문 의 처

02)6788-5377